

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

출강 시수 관리 체계 관련 후속 안내 [월별 교육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]

2021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경기지역 8개 분야 운영기관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.

진흥원은 지난 2, 3월 두 차례의 공지를 통해 출강 시수 사전관리 체계를 수립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추가적인 개선책의 고안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.

그에 따라 관계자 협의 및 예술강사 간담회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하여 온 바, 그 결과로서 지난 4월 16일 4개 예술강사 단체(‘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 지부’, ‘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’, ‘전국예술강사연합 예정연’, ‘학교예술강사모임’)와의 합의를 통해 ‘월별 교육계획 변경 절차의 간소화’를 포함한 몇 가지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.

해당 세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출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□ 월별 교육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|--|--|
| 출강시수 제한 | - 월 59시수의 범위 내에서 출강 가능 | - 좌동 |
| 월별 출강시수 변경 절차 | - 약정한 월별 출강시수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달 말일까지 월별 출강계획서 제출 및 근로계약서 변경 체결 필수 | - <u>월별 출강계획서 제출 및 근로계약서 변경 체결 절차 일체 생략</u> ※ 연간 총 출강시수, 근로계약기간 등의 변경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 절차 필요 |

○ 총 출강시수의 변경 없이 월별 출강시수의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서류 제출이나 고지 등 생략

○ 매 월 59시수의 출강 시수 상한 범위 내에서는 학교와 협의하에 자유로이 월별 출강 일정 변경 가능

※ 단, 연간 출강시수(총 출강시수), 근로계약기간(출강기간) 등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안내 사항과 같이 변경 절차 이행 필요

□ 근로계약서 및 월별 출강 계획서 문구 변경

[주요 변경사항 표]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|--|---|
| 근로계약서 | <p>제3조(배치시수와 출강시수)</p> <p>② 예술강사는 운영학교와 출강 일정 등에 대해 협의 후, 학교별로 ‘월별 근로시간(출강시간) 계획서’를 제출하여 연간 출강하고자 하는 시수에 대해 진흥원의 수락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 소정 사항에 따라 수락된 시수를 예술강사의 출강시수로 확정하며, 확정된 출강시수에 변경이 있을 시에도, 최초 확정에 준하는 절차를 통하여 변경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3조(배치시수와 출강시수)</p> <p>② 예술강사는 운영학교와 출강 일정 등에 대해 협의 후, 학교별로 ‘월별 근로시간(출강시간) 계획서’를 제출하여 연간 출강하고자 하는 시수에 대해 진흥원과 합의하여 정한다.</p> <p>③ 제2항 소정 사항에 따라 합의된 시수를 예술강사의 출강시수로 확정하며, 확정된 총 출강시수에 변경이 있을 시에도, 최초 확정에 준하는 절차를 통하여 변경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.</p> |
| 월별 출강 계획서 | <p>본지 ...제출하오니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안내 기타 유의사항</p> <p>6. 작성된 내용과 다르게 출강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, 반드시 사전에 본 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, 교육진흥원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.</p> <p>8. 확정된 계획 내 기재한 출강시간에 출강을 하지 않는 경우 결강 시수로 처리되며, 임의의 사후 보강 등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.</p> <p>9. 기재한 출강 시수를 초과하여 출강하는 경우 등은 출강 및 근로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강사비 등 지급 불가합니다.</p> | <p>본지 ...제출하오니 확인 바랍니다.</p> <p>안내 기타 유의사항</p> <p>6. 연간 총 출강시수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출강월에 변경이 있어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 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, 교육진흥원의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. 단, 월별 출강시수의 변경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 변경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.</p> <p>8. 확정된 연간 출강시수를 출강하지 않는 경우 결강 시수로 처리되며, 임의의 사후 보강 등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.</p> <p>9. 월 59시수를 초과하여 출강하는 경우, 연간 출강시수를 초과하여 출강하는 경우 등은 출강 및 근로제공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강사비 등 지급 불가합니다.</p> |

- 월별 교육계획 간소화 취지에 따라 근로계약서 및 월별 출강계획서 문구 변경
- 그 외 경색된 표현을 보다 유연한 문구로 변경
- 새 근로계약서 양식은 **4월 26일**의 발송분부터 활용하며, 이미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별도 변경 절차 없이 위 변경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

□ 코로나19 관련 예술강사 피해 구제책 시행 계획

-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또는 예술강사의 사정으로 출강 어려운 경우, 우선 간소화 된 월별 출강계획 변경 절차 활용하여 가급적 월 제한시수 내에서 일정 조정하여 소화 필요
- 그럼에도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의 일시 휴교 조치, 강사의 코로나19 확진 또는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로 결손 시수 발생 시, 해당 개별 강사 대상으로 연말에 소정의 증빙 확인 거쳐 유급휴가 처리
- 위 개별 구제책과 별개로,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또는 교육부 학사일정 조정 방침 등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출강시수 소화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, 교육부, 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체활동 통한 시수소화 또는 휴업수당 처리 등 추가 방안 검토 예정

□ 기타 사항

- 향후, 현장 여건에 보다 적합한 예술강사 근로형태 재설계 및 처우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협의체 등 통해 공식 협의 지속 추진 예정

□ 제출처

-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메일 skart@sungkyul.ac.kr

| 구분 | 예술강사 서명 | 담당교사 서명 | 비고 |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출강 전 최초 | ○ | ○ | 출강 전 운영기관 메일 제출 |
| 2 | 출강 중 월별출강시수의 변경 | X | X | 수정·제출 불필요 |
| 3 | 해당학교 총 시수의 변경 | ○ | ○ | 일정 재협의 후 구분1과 동일 |
| 4 | 출강기간의 변경 | ○ | X | 일정 재협의 후 운영기관 메일 제출 |

※ 확정된 출강기간 및 월별 **총 출강시수** 변경이 필요한 경우 ‘**월별 출강 계획서**’ 수정 제출

□ 불임문서

[붙임1] 2021 학교예술강사출강시수 관리체계관련 후속 안내 공지문

[붙임2] 월별출강계획서(재수정)

[붙임3] 2021 학교예술강사 근로계약관련 FAQ(수정)

□ 관련 문의처

| 지역/분야 | 운영기관 | 전화번호 |
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경기 8개 분야 |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| 031-467-8473 |